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6시 15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용도지역안에서의 견폐율	3

##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

2014.04.17 조회수 549 등록자 박종업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1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55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.(개정 2012. 6. 29) 1. 제1종전용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 2. 제2종전용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 3. 제1종일반주거지역 : 60퍼센트 이하 4. 제2종일반주거지역 : 60퍼센트 이하 5. 제3종일반주거지역 : 50퍼센트 이하 6. 준주거지역 : 70퍼센트 이하 7. 중심상업지역 : 90퍼센트 이하 8. 일반상업지역 : 80퍼센트 이하 9. 근린상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 10. 유통상업지역 : 80퍼센트 이하 11. 전용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 12. 일반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 13. 준공업지역 : 70퍼센트 이하 14. 보전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하 15. 생산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하 16. 자연녹지지역 : 20퍼센트 이하 17. 보전관리지역 : 20퍼센트 이하 18. 생산관리지역 : 20퍼센트 이하 19. 계획관리지역 : 40퍼센트 이하 20. 농림지역 : 20퍼센트 이하 21. 자연환경보전지역 : 20퍼센트 이하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0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2 >

# Yeosu Web Contents

